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024. 12. 17.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0. 16. 홍국표 의원 외 36명 발의
- 2. 회부일자: 2024. 10. 18.
-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2024. 12. 17.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홍국표 의원)

1. 주문

○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의 마련과 인공산업 분야의 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AI 관련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 인공지능(AI) 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화 혁신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해 산업구조를 재정립하는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서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적 인 지원이 정부 추진 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이를 체계화한 종합지원과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에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을 촉구 함.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인공지능¹)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신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제도를 마런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24년 3월 13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켰으며²⁾, 미국의 경우 민간 주도의 산업을 추진해오다가 작년 10월 행정명령³⁾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윤리규정과 규제 사항을 마련하였음⁴⁾.

¹⁾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임. (위키백과사전 인공지능 정의)

²⁾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기술의 정의와 적법 활용 요건 등을 적시하고, AI 기술을 그 위험 수준에 따라 등급 별로 그 허용의 범위·한계를 명시하면서 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그 AI 기술의 공급자 등에게 과징금 등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함. (법무부_해외규제 모니터링 제5호, 최신글로벌 인공지능(AI) 규범 동향 리포트, 2024.10.) (검토 보고서 붙임2 참고)

^{3) &#}x27;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4) &#}x27;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 국회도서관(2024-1호, 통권 제73호)

-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2019.12.17., 검토보고서 붙임1)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 정책 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정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가 미 흡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⁵).
-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6)을 필두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으로 부터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 보호,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왔음(검토보고서 붙임3).
-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 진흥'과 '규제 수준 및 안정성 확보' 사이에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⁷⁾되어 왔으며, 고영향 인공지능⁸⁾의 위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법의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법률 제정이 지연되어 왔음⁹⁾.
-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보고서 붙임4)을 지난 11월 26일에 의결하고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향후 본회의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임.

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p.7, 2021.11.

⁶⁾ 의안번호 2022593호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2019.9.23.)

⁷⁾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p.12~16, 2024.7.

^{8) &#}x27;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l 시스템을 '고영향 Al'로 규정함. "Al기본법·단통법 폐지법, 국회 과방 위 통과···고영향 Al 규정도 추가" - 경향신문, 2024.11.26.

^{9) &}quot;진흥이냐 규제냐...AI 기본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경향신문, 2024.09.24.

- 이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의 체계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인공지능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환경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건의안 발의 이후 국회 과방위에서 대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수정 의견 〉

건 의 안	수 정 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은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가 2016년 이세돌 9 단과 벌인 바둑 대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 졌고, 2022년 12월에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 능 '챗GPT'등장 이후에는 인류의 미래에 혁 명적 발전을 가져올 핵심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중략)	(중략)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인 수요는 높아지면서 지난 제2 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2대 <u>국회에서도</u>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u>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u>	
(중략)	(중략)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의 마련과 인 공산업 분야의 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가 <u>조속히 과</u> <u>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u> <u>공지능</u> 관련 법안을 심사·의결하길 촉구한 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건의안 발의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와 법제사법위원회(2024.12.17.)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본문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함.

Ⅷ.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번호 2182

제안일자 : 2024. 12. 17. 제 안 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건의안 발의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와 법제사법위원회(2024.12.17.)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본문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건의안의 본문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란 표 현을 현황에 맞게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건 의 안	수 정 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은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가 2016년 이세돌 9단과 벌인 바둑 대결로 대중에게 널리 알 려졌고, 2022년 12월에 등장한 대화형 인 공지능 '챗GPT'등장 이후에는 인류의 미래 에 혁명적 발전을 가져올 핵심 기술로 기 대되고 있다.	
(중략)	(중략)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인 수요는 높아지면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 되었고, 제22대 <u>국회에서도</u> 소관 상임위원 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u>제</u> 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중략)	(중략)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의 마련과 인 공산업 분야의 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 화를 위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가 조속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 인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심사·의결하길 촉구한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1. 주문

○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의 마련과 인공산업 분야의 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AI 관련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 인공지능(AI) 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화 혁신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해 산업구조를 재정립하는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지원이 정부 추진 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이를 체계화한 종합지원과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에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을 촉구함.

3.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가 2016년 이세돌 9단과 벌인 바둑 대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고, 2022년 12월에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등장 이후에는 인류의 미래에 혁명적 발전을 가져올 핵심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기존의 기술과 접목되어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등 종전에 구현이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그 영향은 경제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선도와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연구 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고,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산업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윤리성,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이며,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인공지능법을 제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인 수요는 높아지면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중이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이 진행 중이며,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미루게 되면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빠르게 도태되고 미래 성장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의 마련과 인공산업 분야의 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가 조 속히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심사·의결하길 촉구한다.

2024.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